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구보

제1480호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공 고

○ 공 고 제 1 1 0 9 호	입법예고(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2
○ 공 고 제 1 1 1 0 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5
○ 공 고 제 1 1 1 8 호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5
○ 공 고 제 1 1 1 9 호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27
○ 공 고 제 1 1 2 1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35
○ 공 고 제 1 1 2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7
○ 공 고 제 1 1 3 0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144
○ 공 고 제 1 1 3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48
○ 공 고 제 1 1 3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65
○ 공 고 제 1 1 3 9 호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72
○ 공 고 제 1 1 4 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182

고 시

○ 고 시 제 6 9 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183
○ 고 시 제 7 0 호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84
○ 고 시 제 7 1 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공고 및 게재	186
○ 고 시 제 7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91
○ 고 시 제 7 3 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5
○ 고 시 제 7 4 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선정 고시	204
○ 고 시 제 7 5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205
○ 고 시 제 7 6 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선정 고시	208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109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0.

남 동 구 청 장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규칙 중 장애등급제를 인용한 조문을 장애정도 기준에 맞도록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를 인용한 조문을 장애정도 기준에 맞는 용어로 변경 (안 전체)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수강료 감면 : 1 ~ 3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장료 감면 :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90,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규칙 중 장애등급제를 인용한 조문을 장애정도 기준에 맞도록 일괄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를 인용한 조문을 장애정도 기준에 맞는 용어로 변경 (안 전체)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수강료 감면 : 1 ~ 3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장료 감면 :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110호

2019년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신규 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
나. 시 행 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다. 설치 장소

연번	장소
1	구월3동 미래광장 이레인오피스텔 앞(미래로 44)
2	구월4동 모래내시장 북문 쪽 삼거리(구월로 277)
3	구월4동 모래내시장~문일여고 도로(구월남로 296)
4	구월4동 모래내어린이공원 앞 (구월동 1324-7)
5	간석1동 남동대로 915번길 25(간석동 313-3)
6	간석1동 간석풍림오거리(석산로 52)
7	간석2동 올리브백화점 사거리(간석동 272-1)
8	만수1동 삼환아파트 1,2단지 사잇길(소래로 669)
9	만수2동 민방위교육장~향촌방향 도로(만수서로11번길 4)
10	만수2동 만수로 95, 앞 도로(만수동 822-19)
11	만수2동 쪼끼쪼끼 구월점 앞(만수동 994-3)
12	서창2동 장아초등학교 앞(서창방산로 100)
13	논현2동 훈장골 앞 삼거리(논현로 17)
14	논현2동 스텔라마리나호텔 앞 사거리(호구포로 205)
15	논현고잔동 모두병원 맞은편(논현동 785)
16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앞(앵고개로 847번길)

라. 예고기간 : 2019. 6. 11 ~ 2019. 7. 2(공고일로부터 22일)

마.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민원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바.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주차민원팀)로 문의 (☎032-453-5193)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2019년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신규 설치			
2. 당 사 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연락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 하

2019년 남동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예정 장소

연번	위 치
1	구월3동 미래광장 이레인오피스텔 앞(미래로 44)
2	구월3동 모래내시장 북문 쪽 삼거리(구월로 277)
3	구월4동 모래내시장~문일여고 도로(구월남로 296)
4	구월4동 모래내어린이공원 앞 (구월동 1324-7)
5	간석1동 남동대로 915번길 25(간석동 313-3)
6	간석1동 간석풍림오거리(석산로 52)
7	간석2동 올리브백화점 사거리(간석동 272-1)
8	만수1동 삼환아파트 1,2단지 사잇길(소래로 669)
9	만수2동 민방위교육장~향촌방향 도로(만수서로11번길 4)
10	만수2동 만수로 95, 앞 도로(만수동 822-19)
11	만수2동 쪼끼쪼끼 구월점 앞(만수동 994-3)
12	서창2동 장아초등학교 앞(서창방산로 100)
13	논현2동 훈장골 앞 삼거리(논현로 17)
14	논현2동 스텔라마리나호텔 앞 사거리(호구포로 205)
15	논현고잔동 모두병원 맞은편(논현동 785)
16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앞(앵고개로 847번길)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고정형 CCTV 신규설치)

①구월3동 미래광장 이레인오피스텔 앞(미래로 44)

■ 위치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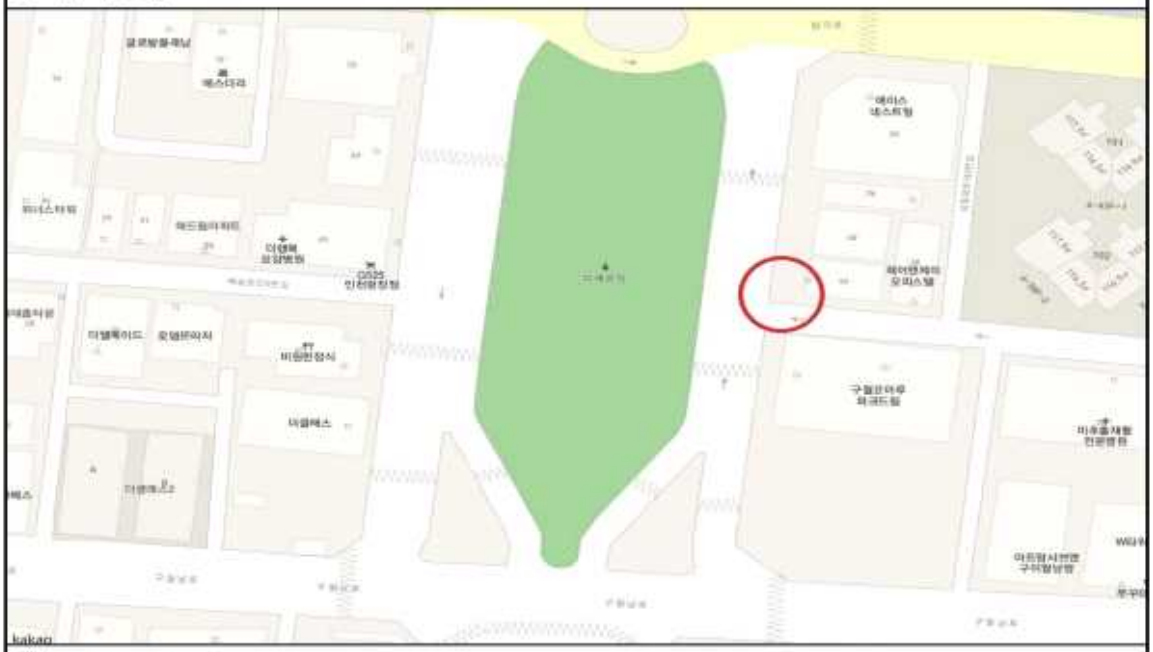

■ 현장사진

②구월4동 모래내시장 북문 쪽 삼거리(구월로 277)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③구월4동 모래내시장~문일여고 도로(구월남로 296)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④구월4동 모래내어린이공원 앞(구월동 1324-7)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⑤간석1동 남동대로 915번길 25(간석동 313-3)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⑥간석1동 간석풍림오거리(석산로 52)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⑦간석2동 올리브백화점 앞 사거리(간석동 272-1)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⑧만수1동 삼환아파트 1,2단지 사잇길(소래로 669번길)

■ 위치도면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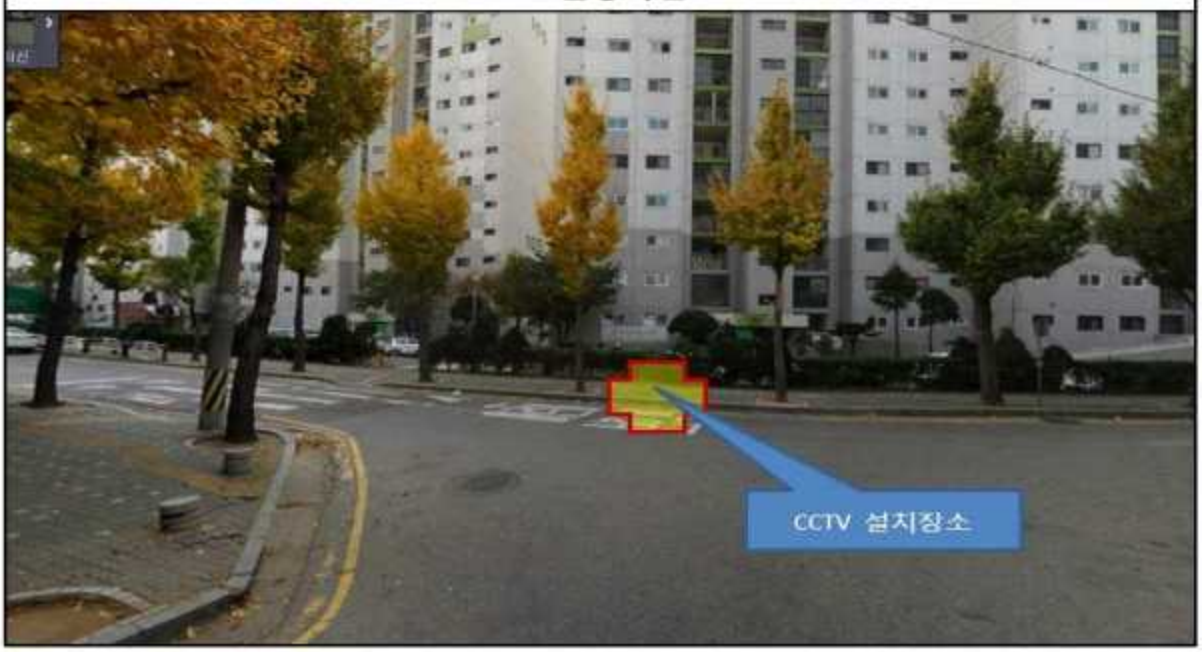

⑨만수2동 민방위교육장 ~ 향촌방향 도로(만수서로 11번길 4)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⑩만수2동 만수로 95, 앞 도로(만수동 822-19)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⑪만수2동 쪼끼쪼끼 구월점 앞(만수동 994-3)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⑫서창2동 장아초등학교 앞(서창방산로 100)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⑬논현2동 훈장골 앞 삼거리(논현로 17)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⑭논현2동 스텔라마리나호텔 앞 사거리(호구포로 205)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⑮논현고잔동 모두병원 맞은편(논현동 785)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⑯논현고잔동 주민센터 앞(앵고개로 847번길)

■ 위치도면

■ 현장사진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118호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1.

남 동 구 청 장

1. 규칙명 :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개인정보 보호 및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 등 반영을 통하여 현행 규칙을 보완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사항 보완(안 제3조 ~ 제6호)
○ 임용시험 블라인드 채용 표준안 반영
○ 신규임용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25조 ~ 제26조)
○ 승진임용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27조 ~ 제29조)
○ 전보 및 인사교류 등 관한사항 신설(안 제34조 ~ 제40조)
○ 교육, 임용기준 등 관한사항 신설(안 제41조 ~ 제45조)
○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별표 및 별지 등 수정 및 보완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 ☎ 453-2195, FAX 453-21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전부개정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년 6월 일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개인정보 보호 및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 등 반영을 통하여 현행 규칙을 보완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사항 보완(안 제3조 ~ 제6호)
○ 임용시험 블라인드 채용 표준안 반영
○ 신규임용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25조 ~ 제26조)
○ 승진임용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27조 ~ 제29조)
○ 전보 및 인사교류 등 관한사항 신설(안 제34조 ~ 제40조)
○ 교육, 임용기준 등 관한사항 신설(안 제41조 ~ 제45조)
○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별표 및 별지 등 수정 및 보완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행정안전부령 2018.12.21.)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동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동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남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인사정책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사항 중 특히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상의 지급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 승진임용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시험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3조에 따라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 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민간전문가 중 4분의 1이상은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

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1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

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 및 별표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9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14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14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 부설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경력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경력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

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 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15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2 및 별표15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 예정 직급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7급, 8급, 지도사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6 및 별표17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2 및 별표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8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2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9의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9의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10과 같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9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8과 같다.

제4장 신규임용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 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 후보자를 임용 한 경우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임

용 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상·하한액 범위에서 정하며,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직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2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승진임용

제27조(기본원칙)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위직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의 균형 있는 관리와 기관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각 기관 간의 상호 교류, 승진인원의 배정 등 필요한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

제28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승진심의 등) ①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영 제30조제1항의 별표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30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1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9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과,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20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과,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 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2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직렬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5점
2.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25점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23과 같다.

제6장 전보 및 인사교류 등

제34조(순환보직) 공무원을 전보할 때에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1.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직위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영 제27조에 따른다.
2.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4.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5. 신체 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35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중인 사람
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 또는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제36조(근무기간의 계산) 제34조에 따른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근무기간은 보직 발령일부터 계산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직제개정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부서의 관장 업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21와 같다.

제38조(구 및 동간의 인사교류) 구청장은 구 및 동 간의 순환전보를 통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한다.

제39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40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그 업무에 경험이 있는 (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하되,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7장 교육

제41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각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 등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게는 이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각 교육과정 수료자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함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임용기준 및 비위자 관리

제43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임용제한)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45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로 인한 경고, 훈계 또는 타 직위로 전보된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은 폐지한다.

[별표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ㆍ구, 읍ㆍ면ㆍ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직렬 \ 직류 \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직류 \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 직류 \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직렬 \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직렬 \ 직류 \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2. 삭제

비 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 술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직류 \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 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직류 \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직류 \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 제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수 질 대 기 폐 기 물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6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8]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직류 \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화 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직류 \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 직류 \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직류 \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직렬	직류 \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금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화학	기술사(농화학)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 설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수도토목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10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

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11]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12]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12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13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1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잠 업	기 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수 산 물 검 사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산업기사 :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가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생사, 의류, 품질관리 기 능 장 : 염색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화 학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농촌지도	임 업 조 경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농촌지도	수 의 가축위생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어촌지도	해양환경 수산자원 어 촌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14]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2급·연구관 지도관	3급·연구관 지도관	4급·연구관 지도관	5급·연구관 지도관	6급·연구사 지도사	7급·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수 (3년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판사·검사			9호봉 이상	6호봉 이상	4호봉 이상					
기능직공무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1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 금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 물 검 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제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16]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17]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18]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1.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전기		일반전기
	전자		전자
	금속		금속
			야금
	섬유		섬유
	화공		화공
	화학		
	물리		-
농업연구	작물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지도	농업
	농업환경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지도	농업
	작물보호	농업	일반농업
			식물검역
		농촌지도	농업
	농업경영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농업경영
	잠업곤충	농업	잠업
		농촌지도	잠업
	원예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지도	농업
			원예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농공	공업	농업기계
		시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업	임업	전직류
	조경	농촌지도	임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수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해양수산	수산중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로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해양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어촌지도	어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학	약무	약무
			약제
	공중보건	보건	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경	환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목	시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건축

2. 지도직공무원

지도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업	농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물
			작물보호
			농업환경
			농업경영
			원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업	녹지	전직류
		녹지연구	임업
			조경
	잠업	농업	잠업
		농업연구	잠업곤충
	원예	농업연구	원예
	축산	농업	축산
		농업연구	축산
	가축위생	수의	수의
		수의연구	수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공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공
	농업토목	시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공
	농촌생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중식
			어로
			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	전직류

[별표19]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 고 : [별표2], [별표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20]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구분 \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표21]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임용예정 계급		2급·연구관·지도관	3급·연구관·지도관	4급·연구관·지도관	5급·연구관·지도관	6급·연구사·지도사	7급·연구사·지도사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호봉 이상의 교원	16호봉 이상의 교원	12호봉 이상의 교원	11호봉 이하의 교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		이사 (3년이상)	이사	부장	과장 (차장)	계장 (대리)	평사원 (3년이상)	평사원	

[별표22]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행정5급중 6급재직시 전산직렬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전기응용,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소음진동, 산업계측제어)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교통,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에너지관리)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소음진동)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영사, 교통,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음진동, 철도운송산업기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일반전기)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품질관리, 컴퓨터시스템운용, 소방, 전기안전,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품질경영, 승강기, 사무자동화,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에너지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품질관리,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용접, 품질경영,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점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장(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산업기사(금속재료, 재료조직평가,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품질경영,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 업 (일반화공) (가 스)	기술사(화공, 품질관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지질 및 지반, 해양)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응용지질,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식품)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생물공학, 식품, 식물보호)	산업기사(유기농업, 종자, 식품, 식물보호)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농화학)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산림, 조경,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자연환경관리)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시설원예, 종자, 화훼장식,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자연생태복원, 임업종묘,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해양)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수산양식, 어로, 해양조사, 식품,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수산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일반기계)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가공)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보 건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치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식품위생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방사선관리)	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기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의공	응급구조사 2급, 의공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기상예보,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해양, 조경, 농화학,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화공,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기상, 기상감정,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해양환경,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생물분류, 광해방지)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농림토양평가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해양조사,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항만 및 해안, 조경, 지질 및 지반) 건축사	기사(교통, 도시계획, 건축,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응용지질)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교통, 건축, 건축일반시공,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일반토목)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	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건설안전)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측 지)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교통시설)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적,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조경,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기사(교통, 도시계획,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건설안전, 콘크리트, 응용지질)	산업기사(교통,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건설안전, 콘크리트)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위생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건설안전)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기운영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관리, 소방, 전기안전)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운영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용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배관, 판금제관, 농업기계, 용접,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품질관리, 화약류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가스운영		기술사(화공,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화약류관리, 가스)

계급 /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가공)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산림, 조경, 농화학, 종자, 축산, 식품)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종자, 축산,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축산,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위생관리) 임상관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나. 연구사

계급 /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화공, 섬유, 의류,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공장관리, 포장, 품질관리, 제품디자인, 지질 및 지반, 해양,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용접,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섬유, 의류,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이드, 포장, 품질경영,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컬러리스트, 응용지질,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반도체 설계)
농업연구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조경, 섬유, 의류,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조경, 메카트로닉스, 생물공학, 섬유, 의류, 식품, 식물보호,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위생사, 영양사, 평상교육사 1·2급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생물공학,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품질관리, 농어업토목,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금형, 용접,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사(품질경영, 토목, 조경, 도시계획,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용접,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유기농업, 축산, 생물공학)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산림,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조경)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시설원예, 종자, 조경, 화훼장식)
해 양 수산연구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생물공학,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계급 / 직렬	연 구 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해양, 조경, 농화학,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기상예보, 화공)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기상,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해양환경,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생물분류)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다. 지도사

계급 /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축산, 산림,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조경, 도시계획,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금형, 용접, 섬유, 의류, 식품,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교통)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자동차정비,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용접, 섬유, 의류,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식품,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토양환경, 화훼장식, 농화학, 식물보호, 정밀측정, 승강기, 교통)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 3.27. 이전 취득.)
어촌지도	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관리, 해양환경, 수산제조, 수질환경, 해양자원개발)

비고 : 1.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을 평정할 수 없다.

2. 명칭변경, 통합,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2급 자격증은 정수사업소 근무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구분	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별표23]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

언어	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성적	가산점
영어	TOEFL	CBT	197점 이상	0.25
		IBT	71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그 밖의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0.25

비고 :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㊀)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시연도 및 회수	( )년도 제 회		
응시지구(기호) 응시번호	지구	번	
직급별	급 직		

※등록번호	제 회 번			
※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출신학교 명	⑧ 특기	⑨ 병역 필미필	⑩ 희망 기관	⑪ 신원조사			⑫ 추 천			⑬ 임 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1회	제2회	제3회	연월일	직명	근무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20 . . .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 용 자 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관계서류 부

직 인

남 동 구 청 장

1.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용연월일	일용직급	임용직위	비 고

2.임용불응자 명단

등 록 번 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요구					직류	
						계급	급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명	
	한자					직류	
						계급	급
⑦ 선 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격·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인) 남 동 구 청 장	계인 (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 . .	. . .	. . .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번호		응 시 표	
년 시행 제 회 시험		계인	(사진)
임용예정직명 : 성 명 : 시험요구기관명 :	(급 류)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table>
<tr><td>성 명</td><td></td><td>성별</td><td>남,여</td><td>생년
월일</td><td>년 월 일</td><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시험구분</td><td colspan="4">( )직
제 회 9급공무원 시험</td><td>합격일자</td><td>년 월 일</td><td>유효기간</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학 력</td><td colspan="4"></td><td>경 력</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임용상황</td><td>임용일자</td><td colspan="2">임용부서</td><td colspan="2">시보기간</td><td colspan="2">시보단축기간</td><td colspan="2">시보단축사유</td><td>보직여부</td></tr>
<tr><td>년 월 일</td><td colspan="2"></td><td colspan="2">년월일
월간
년월일</td><td colspan="2">월</td><td colspan="2"></td><td>일자:년월일
직위:</td></tr>
<tr><td rowspan="3">수습계획
및
수습실적</td><td>배치부서</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수 습
계 획
기 간</td><td>… ~
…
(일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실 지
수 습
기 간</td><td>… ~
…
(일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적 감재 정용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미 흡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적 감재 정용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비 위 관 계 기 록 카 드

○ 성 명 :
○ 생년월일 :

○비위내용기록(경고, 훈계 등 비위내용)

조치당시 소속 및 직위	비위내용	적발기관	조치사항		기록자 날인
			년월일	처분	

* 본 카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119호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1.

남 동 구 청 장

1. 규칙명 :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폐지규정안

2. 폐지이유
 남동구 인사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과 내용이 중복·유사한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 폐지 (제정 1988.12.12. 훈련 제24호)

4. 의견제출
 이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 ☎ 453-2195, FAX 453-21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폐지규정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년 6월 일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인사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과 내용이 중복 · 유사한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 폐지
(제정 1988.12.12. 훈령 제24호)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2호 2019.05.21.)

○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행정안전부령 2018.12.21.)

남동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규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관리 규정

(　　제정) 1988.12.12 훈령 제24호
(일부개정) 1999.05.04 훈령 제139호
(일부개정) 2016.12.23 훈령 제33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 및 5급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승　　진

제 3 조(기본원칙) 구의 상위직 결원보충은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력의 균형있는 관리와 기관간의 승진 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기관간의 상호교류, 승진인원의 조정배경 등 인사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실시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특수분야근무자관리) ① 특수분야의 근무자는 전문지식의 최대한 활용을 위하여 당해 분야에 장기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 근무후 가급적 당해 분야에서 승진한다.

② 제1항의 대상분야는 기술직, 세무, 예산, 도시계획업무와 장기 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 3 장 전　　보

제 6 조(동일직위간의 전보) ①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직위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직위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임용 및 근무기준에 따라 전보한다.

② 구청장은 5급이하 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 평가서와 상사의 지도

관찰서를 통한 효율적인 보직 여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자기평가서 제출) 5급이하 공무원은 자기반성과 희망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1회(당해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기준일)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 8 조(상사의 지도관찰서 제출) 인사자료에 공하기 위하여 근무 성적평정표작성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 관찰 내용을 평정자가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 9 조(순환보직)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 요건을 고려하여 적제 적소에 순환보직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제 10 조(근무성적우수자 발탁) 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구청, 사업소로 발탁 전보한다.

제 4 장 교 육

제 11 조(교육과정의 적용범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의 고급 및 중견간부 양성과정, 고급공무원 정예교육과정, 6월이상 국외 훈련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교육대상자 선발) ① 고급간부 양성반 입교대상자는 당해년도 선발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5급공무원을 추천 선발할 때에는 승진서열 3배수 이내의 자 중에서 지방행정고급간부로의 자질을 구비한 자를 엄선하여야 한다.

② 중견간부양성반 입교 대상자는 6급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 경력자중 당해년도 선발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선발한다.

제 13 조(교육성적우수자 우대) ① 중견간부 양성반 수료자중 교육성적우수자는 입교전 직위보다 상향보직하고, 승진시험합격 요구인원의 5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일반승진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6개월이상 국외훈련교육과정 이수자는 전문분야 또는 이에 상응한 분야에 보직한다.

제 14 조(교욱성적불량자 조치) 제12조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입교자중에서 수업태만으로 중간 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직 조치된 자는 필요한 인사조치를 한다.

제 15 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간부양성과정 수료자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응용 활용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제 5 장 임용기준 및 비위자 관리

제 16 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코자 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임용 요건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17 조(임용제한) 승진, 전보등으로 인한 인사시에는 그 대상을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시켜야 한다.

제 18 조(비위문책사항 기록) ①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하여 타 직위로 전보시에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징계절차에의한 처분내용은 징계난에 기록으로 제외됨)

② 제1항의 기록 내용은 본인의 비위, 벌금등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사항 및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 처리로 물의가 야기된 사항 등으로 경고, 훈계 또는 타 직위로 전보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한다.

제 19 조(기타사항) 5급 지방공무원과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32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훈령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훈령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기록관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121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너4731, **다0922 , **부5275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6.11.(화) ~ 6.26.(수)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6.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6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너4731	김*명	2019-06-07	폐문부재	리플렉터 LED	216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서창동)
2	**다0922	박*범	2019-06-07	폐문부재	미인증안개등 LED	215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번길 **, ***호(간석동)
3	**부5275	정*현	2019-05-28	폐문부재	미인증후등화 LED	21596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12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1.

남 동 구 청 장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기준에 맞도록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문을 장애정도 기준에 맞는 용어로 변경

- 제2조 본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 변경
- 제6조 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조정
- 제7조 본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571, FAX 453-58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년 6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포함한「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시행(17.12.1.공포, 2019. 7. 1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지자체의 서비스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조항등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수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청자격중 ‘장애등급 2급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개정안 제5조)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순위 [별표] 일부내용 조정(개정안 제6조)

○ 위탁운영 가능한 장애인 ‘장애등급 2급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개정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정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 한다.

제6조 관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 본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구 지방공기업의 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구청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사본,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에 한함)	제5조(신청) ----------. 1. ---------- 2. ----------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현 행

<별표 1>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제2조 및 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개 정 안

<별표 1>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제2조 및 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삭제>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별첨 1) 개정전_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별첨 2) 개정후_장애인의 장애정도. 끝.

공 고

남동구청 제2019-1130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6.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6.11.~2019.06.25.
3. 공고대상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10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리번호	2019-0011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28. ○ 견인일 : 2019.05.25.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 12 삼성인테리어 옆
	2019-0019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6.10. ○ 견인일 : 2019.05.25.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17 노상
	2019-0025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28. ○ 견인일 : 2019.05.25.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488 청솔의 집 뒷골목
	2019-0025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15. ○ 견인일 : 2019.05.25.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894-1 광명10차아파트 후문 앞 인도(3동 방향)
	2019-0026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28. ○ 견인일 : 2019.05.25.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208-21 영원룸 주차장 사유지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리번호	2019-0027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6.10. ○ 견인일 : 2019.05.25.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32 인도
	2019-0027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6.10. ○ 견인일 : 2019.05.25.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56-10 사유지 내
	2019-0027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6.10. ○ 견인일 : 2019.05.25.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64번길 28 개인주택 앞
	2019-0027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6.10. ○ 견인일 : 2019.05.25.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384-6 단독주택 사유지 내
	2019-0028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6.10. ○ 견인일 : 2019.05.25.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27 앞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19-0011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5동 880) 만경로 12 삼성인테리어 옆	2019.06.25. 이후	견인예정	
2	2019-0019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1동 592-28)논고개로176번길 17 노상	2019.06.25. 이후	견인예정	
3	2019-0025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37-488 청솔의 집 뒷골목	2019.06.25. 이후	견인예정	
4	2019-0025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4동 894-1 광명10차아파트 후문 앞 인도(3동 방향)	2019.06.25. 이후	견인예정	
5	2019-0026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1동 1208-21 영원룸 주차장 사유지	2019.06.25. 이후	견인예정	
6	2019-0027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촌동 625-32 인도	2019.06.25. 이후	견인예정	
7	2019-0027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456-10 사유지 내	2019.06.25. 이후	견인예정	
8	2019-0027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1동) 구월로64번길 28 개인주택 앞	2019.06.25. 이후	견인예정	
9	2019-0027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3동 1384-6 단독주택 사유지 내	2019.06.25. 이후	견인예정	
10	2019-0028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3동 83-16) 간석로 27 앞	2019.06.25. 이후	견인예정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1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2조)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지원(안 제13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도시관리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804, FAX 453-29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조례(안) : 별첨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 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2조)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지원(안 제14조, 제1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3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남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 활성화(실행)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 되고 공공지원을 받는 마을관리를 위한 대표적 주민 자조 조직을 말한다.

제3조(참여 등) ①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방범시설, 독거노인 및 여성・노약자응급 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자전거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4.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공임대상가,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방, 공동텃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간 갈등 조정
4.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기록관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2. 도시재생 우수지역 견학
3. 주민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4. 그 밖에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정산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를 위촉 또는 임명 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는 도시재생사업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재생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위원회·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체 등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에 대하여 활동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예산, 도시, 건설, 건축, 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국토교통부인가 마을관리협동조합
5.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17조(공유재산의 위탁) ① 주민협의체 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의 원활

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위탁 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8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영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신명조, 14pt, 진하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명조, 14pt, 진하게)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7. 12. 26.>
11. 삭제 <2017. 12. 26.>
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

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신명조, 14pt, 진하게)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13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2.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9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정원 반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및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059명 ⇒ 1,102명 (증 4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038명 ⇒ 1,081명 (증 43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4조 별표 3) 일부변경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059→1,102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054→1,097					
2급	1	1				
4급	6	4	1	1		
5급	64	33	2	7	2	20
6급 이하 계	983→1,026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년 6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19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정원 반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및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059명 ⇒ 1,102명 (증 43명)
  - · 집행기관의 정원 : 1,038명 ⇒ 1,081명 (증 43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4조 별표 3) 일부변경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059→1,102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054→1,097					
2급	1	1				
4급	6	4	1	1		
5급	64	33	2	7	2	20
6급 이하 계	983→1,026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59명”을 “1,10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38명”을 “1,08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059명”을 “1,10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102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097					
2급	1	1				
4급	6	4	1	1		
5급	64	33	2	7	2	20
6급 이하 계	1,026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한다)의 총수 1,059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 행 기 관 : 1,038명
2. (생 략)
3. 총 계 : 1,059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059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054					
2급	1	1				
4급	6	4	1	1		
5급	64	33	2	7	2	20
6급 이하 계	983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1,102명----------.

1. ---------- 1,081명
2. (현행과 같음)
3. ---- 1,102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102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097					
2급	1	1				
4급	6	4	1	1		
5급	64	33	2	7	2	20
6급 이하 계	1,026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139호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13.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문의 범위(안 제2조)
○ 공인노무사의 위・해촉 및 임기(안 제3조 및 제4조)
○ 자문의 절차(안 제5조)
○ 자문에 대한 수당 지급(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90,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공인노무사법」제5조 및 제20조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년 6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우리 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문의 범위(안 제2조)

○ 공인노무사의 위・해촉 및 임기(안 제3조 및 제4조)

○ 자문의 절차(안 제5조)

○ 자문에 대한 수당 지급(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공인노무사법」제5조 및 제2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의 범위) ①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산하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구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자 문 실 적 부

[고문 공인노무사 : ○○○]

연번	의뢰일	부서명 담당자	자문 형식	자 문 내 용	회신일	회 신 내 용	비고

[참고자료]

□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3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144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1-7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열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1-7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및 건설과(☎453-272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6.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2-2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7호선)
   - 명 칭: 고잔동372-2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소로1-7호선)
3. 사업규모: A=2,746.0㎡, B=10.0m, L=230.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별첨」
7.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장 소: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6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9. 6. 1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대상

지 구 명	위 치	급경사지 현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
		유 형	등급	규모		
부평농장 급경사지	남동구 간석동 산34-9번지 일원	인공비탈면	D→C	L=1,000m H=50m	위험사면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	2010. 4.19.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일 : 2019. 6. 10.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총괄과 (☎032-453-2333)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70호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7-148호(2017.12.20.)로 사업시행인가 된 남동구 간석1동 900-138번지 일원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41 일원(간석동 900-138)
   나. 면적 : 32,368.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백운주택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인)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0-1, 3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9년 6월 11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토지이용계획

합계	공동주택 용지 (상가포함)	정비기반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원	도로	소계	기타(종교)
32,368.4	24,941.3	5,677.5	1,627.1	4,050.4	1,749.6	1,749.6

      2) 건축 연면적 : 96,156.18㎡

3) 건축물 규모 : 지하3층~지상28층 아파트 9개동 7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계	39형	59A형	59B형	84형		기타(종교)
계	728	37	480	131	80	374.67	1,749.6
토지등 소유자	214	-	153	22	39	-	1,749.6
보류시설	7	-	7	-	-	-	-
일반분양	470	-	320	109	41	374.67	-
임 대	37	37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분	신설(무상귀속)			폐지 (무상양여 : 5,281.1)		
	계	공원	도로	계	도로	주차장
규모(㎡)	5,677.5	1,627.1	4,050.4	5,491.6	4,593.6	898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2) 및 백운주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424-871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8-71호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의12 제4항에 따라 직권부여한 상세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33번길 30-5
(지하101,지하102,101,102,201,202,301)외 17건

번호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통보구분	부여구분
별 도 열 람(1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 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 사용하여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민원 발생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공적장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하였습니다.

접수번호	도로명주소	지하여부	층정보	호정보
213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33번길 30-5 (만수동)	지상	3	301
		지상	2	202
		지상	2	201
		지상	1	102
		지상	1	101
		지하	1	102
		지하	1	101
213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22 (도림동)	지상	2	202
		지상	2	203
		지상	2	204
		지상	3	301
		지상	1	101
		지상	3	303
		지상	3	304
		지상	2	201
		지상	3	302
213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10 (도림동)	지상	3	301
		지상	2	202
		지상	2	201
		지상	1	101
		지상	1	102
21392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4-1 (도림동)	지상	2	202
		지상	3	301
		지상	2	201
		지상	3	302
		지상	1	101
		지상	1	102
		지상	1	103
213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동로4번길 20 (도림동)	지상	3	301
		지상	2	202
		지상	1	
		지상	2	201
2139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15-23 (도림동)	지상	3	301
		지상	2	201
		지상	1	101
		지상	4	401
213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3 (도림동)	지상	1	101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3	301
		지상	3	302
		지상	4	401
		지상	4	402
2138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31번길 7-12 (도림동)	지상	1	101
		지상	1	102
		지상	1	103
		지상	2	201
		지상	4	401
		지상	2	203
		지상	3	301
		지상	3	302
		지상	3	303
		지상	2	202
		지상	3	302
		지상	4	401

접수번호	도로명주소	지하여부	층명칭	호명칭
2138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31번길 7-7 (도림동)	지상	1	101
		지상	2	201
		지상	3	301
2138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9 (도림동)	지상	1	101
		지상	5	501
		지상	2	202
		지상	2	203
		지상	2	204
		지상	2	205
		지상	3	301
		지상	3	302
		지상	3	303
		지상	3	304
		지상	3	305
		지상	4	401
		지상	4	402
		지상	4	403
		지상	4	404
		지상	2	201
2138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8 (도림동)	지상	1	101
		지상	1	102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2	203
		지상	4	402
		지상	3	301
		지상	3	302
		지상	3	303
		지상	3	304
		지상	4	401
		지상	2	204
2138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5-1 (도림동)	지상	1	101
		지상	1	102
		지상	1	103
		지상	2	201
		지상	4	401
		지상	2	203
		지상	3	301
		지상	3	302
		지상	3	303
		지상	2	202
2138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잠자로46번길 17 (장수동)	지상	1	101
		지상	2	201
		지상	4	401
		지상	3	301
		지상	3	302
		지상	2	202
213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2-7 (장수동)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2	203
		지상	2	204
		지상	5	501
		지상	3	302
		지상	3	303
		지상	4	401

접수번호	도로명주소	지하여부	층명칭	호명칭
		지상	4	402
		지상	3	301
213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6번길 82-17 (장수동)	지상	2	201
		지상	2	202
		지상	2	203
		지상	4	401
		지상	3	302
		지상	3	303
		지상	3	301
213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16번길 22 (장수동)	지상	1	101
		지상	1	102
		지상	2	201
		지상	4	401
		지상	3	301
		지상	3	302
		지상	2	202
213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51번길 4 (장수동)	지상	2	201
		지상	1	101
213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6번길 71 (장수동)	지상	2	201
		지상	3	301
		지상	1	101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7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454 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2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454(논현동)	20090706	앵고개라는 고개를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아암대로 145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54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3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71(논현동)	20090706	앵고개라는 고개를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 77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71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3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83(논현동)	20090706	앵고개라는 고개를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 78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83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66(논현동)	20090706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 76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66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0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21(구월동)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72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21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2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675(구월동)	20090710	옛 지명인 경신마을 위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67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75를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20-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상로 28(구월동)	20091116	남동대로의 동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신상로 2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8을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5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378(논현동)	20091116	행정구역명(만수동)을 이용하여 만수로로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동로 37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78를 건물번호로 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4-64(만수동)	20091116	인근지역에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호수, 소래포구, 습지생태공원 등의 친환경적 입지를 고려하여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 14-6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64를 건물번호로 부여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91(논현동)	20091116	인근지역에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호수, 소래포구, 습지생태공원 등의 친환경적 입지를 고려하여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 9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1을 건물번호로 부여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5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207(논현동)	20091116	인근지역에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호수, 소래포구, 습지생태공원 등의 친환경적 입지를 고려하여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 20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7을 건물번호로 부여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5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73(논현동)	20091116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공원을 인용하여 제명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 17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73을 건물번호로 부여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8(구월동)	20140725	인천 남동구 서창동과 경기 시흥시 방산동의 각각 법정동 명칭를 이용하여 명명함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공원로 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을 건물번호로 부여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22(서창동)	20140602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방산로 2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2를 건물번호로 부여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370번길 106(논현동)	20091116	논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370번길 10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6을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32(도림동)	20091116	독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개로334번길 3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2를 건물번호로 부여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7(서창동)	20091116	문화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독곡로16번길 7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4를 건물번호로 부여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4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3번길 60(구월동)	20091116	문화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서로23번길 6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0을 건물번호로 부여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9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2-18(구월동)	20091116	문화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서로3번길 22-1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2-18을 건물번호로 부여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77-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13-18(구월동)	20091116	서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서로4번길 13-1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18을 건물번호로 부여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3번길 39-9(만수동)	20091116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판로53번길 39-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9-9를 건물번호로 부여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4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38(논현동)	20091116	에코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815번길 3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8을 건물번호로 부여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84번길 34(논현동)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84번길 3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4를 건물번호로 부여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63(논현동)	20091116	남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166번길 6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3을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73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84호(2009.12.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 378호(2015.12.31.)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72호(2016.11.14.)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33번지 일원의 간석초교주변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8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재개발 정비사업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55,705.4	증) 2.5	55,707.9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남동구 구월동 70-33번지 일원	55,707.9	• 측량으로 인한 면적 변경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705.4	증) 2.5	55,707.9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남동구 구월동 70-33번지 일원	55,707.9	• 측량으로 인한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 정 일	비고
-	17	주안동 대1-1 ~대1-14	일반 미관지구	대2-31	96,000	3,460 2,940	편측15	인고 제109호 (1999.9.9)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조서(변경 없음)

결정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중로	1	433	18~23 (주요폭원: 20m)	국지도로	780	대2-31	중2-24	일반도로		인고2009-384(2009.12.14.)	
-	소로	1	13	6~10 (주요폭원: 10m)	국지도로	373	소1-10	중3-6	일반도로		인고2009-384(2009.12.14.)	
-	중로	3	7	12	국지도로	200	소3-192	중2-721	일반도로		인고2009-384(2009.12.14.)	
-	중로	3	6	12	국지도로	526	대1-2	중2-24	일반도로			
-	중로	2	721	15	국지도로	50	중2-24	중3-7	일반도로			
-	소로	1	10	10~12	국지도로	118	중3-7	소1-13	일반도로		인고2009-384(2009.12.14.)	
-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79	소2-112	소2-110	일반도로		인고2009-384(2009.12.14.)	
-	소로	2	101	8	국지도로	25	간석동144-8	중2-24	일반도로			
-	소로	2	103	8	국지도로	38	중2-773	중2-24	일반도로			
-	소로	2	110	8~12 (주요폭원: 12m)	국지도로	371 (185)	중1-433	소2-114	일반도로			
-	소로	2	112	8	국지도로	121	소2-110	소1-11	일반도로			
-	소로	2	114	8	국지도로	130 (82)	중2-24	소2-119	일반도로			
-	소로	2	119	8	국지도로	109 (52)	대2-31	소2-114	일반도로			
-	소로	2	116	8	국지도로	22	중3-6	간석동 144-3번지	일반도로			
-	소로	3	192	4	국지도로	39	중2-773	중2-24	일반도로			

※ (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2)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남동구 구월동 70-75번지 일원	551.0	증) 0.4	551.4	인고 2009-384 (2009.12.14)	조성 후 무상귀속

※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는 주차장은 건축물의 계획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임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주차장	• 면적 변경 551.0㎡→551.4㎡ (증 0.4㎡)	•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 변경

3)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142-11번지 일원	6,042.4	증) 4.2	6,046.6	인고2009-384(2009.12.14.)	조성 후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원	• 면적 변경 6,042.4㎡→6,046.6㎡ (증 4.2㎡)	•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 변경

4)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청사	-	남동구 간석동 70-8번지 일원	1,034.4	감) 3.8	1,030.6	인고2009-384 (2009.12.14.)	부지만 무상귀속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청사	• 면적 변경 1,034.4㎡→1,030.6㎡ (감 3.8㎡)	•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 변경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기정

구역명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다복마을 구역	기정	다복마을 재개발 정비구역	55,705.4㎡	남동구 구월동 70-16번지 일원	176	1	-	175	종교시설 존치

◯ 변경

구역명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다복마을 구역	변경	다복마을 재개발 정비구역	55,707.9㎡	남동구 구월동 70-16번지 일원	176	1	-	175	종교시설 존치

마.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기정)

구역명	결정 구분	구역 구분 명 칭	구역 구분 면 적(㎡)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명 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면 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다복마을 구역	기정	다복마을 재개발 정비구역	55,705.4	획지1-1 (공동주택)	42,747.6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36.9% 이하	100m 이하
				획지1-3 (종교시설)	612.3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30m 이하
				획지1-4 (주차장)	551.0	노외주차장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획지2-1 (공공청사)	1,034.4	공공청사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획지2-2 (종교시설)	798.2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구 분			내 용
건축물 용도	획지1-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획지1-3 획지2-2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획지2-1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획지1-4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 총건설 세대수의 80%이상

40㎡이하	60㎡이하	85㎡이하
5.73%	51.84%	42.44%
임대	분양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60㎡ 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공급 ○ 법정상한용적률 : 249.83%이하 -(법정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x 50% = (249.83-236.9)x 50% = 6.5%이상 (73세대) ※ 사업시행인가시 소형주택면적 확정으로 건설면적 변경될 수 있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전체건립세대수의 5% 이하 ○ 전용면적 40㎡이하는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건축 한계선 위 치: 1-1 도로경계선 / 1-1 인접대지 경계선 계획내용: 6m 이격 / 3m 이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비 고: 공동주택 용지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 완화(인센티브)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부지제공(16.9%)+지하주차장(10%)

※ 획지1-2의 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명	결정 구분	구역 구분 명 칭	구역 구분 면 적(㎡)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명 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면 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다복마을구역	변경	다복마을 재개발 정비구역	55,707.9	획지1-1 (공동주택)	42,756.8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36.81% 이하	100m 이하
				획지1-3 (종교시설)	612.3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30m 이하
				획지1-4 (주차장)	551.4	노외주차장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획지2-1 (공공청사)	1,030.6	공공청사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획지2-2 (종교시설/근린생활시설)	801.9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구 분			내 용
건축물 용도	획지1-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획지1-3 획지2-2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획지2-1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획지1-4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 총건설 세대수의 80%이상

40㎡이하	60㎡이하	85㎡이하
5.73%	51.84%	42.44%
임대	분양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60㎡ 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공급 ○ 법정상한용적률 : 249.83%이하 -(법정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x 50% = (249.83-236.81)x 50% = 6.5%이상 (73세대) ※ 사업시행인가시 소형주택면적 확정으로 건설면적 변경될 수 있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전체건립세대수의 5% 이하 ○ 전용면적 40㎡이하는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고
건축 한계선	1-1	도로경계선	6m 이격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동 주택 용지
		인접대지 경계선	3m 이격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 완화(인센티브)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부지제공(16.81%)+지하주차장(10%)

※ 획지1-2의 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아.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1-1	1	49,953.3	1	남동구 구월동 69-66번지 일원	42,747.6	공동주택
1-2			2	남동구 간석동 141-2번지 일원	6,042.4	소공원
1-3			3	남동구 구월동 70-32번지	612.3	종교집회장
1-4			4	남동구 구월동 70-75번지 일원	551.0	주차장
2-1	2	1,832.6	1	남동구 구월동 70-8번지 일원	1,034.4	공공청사
2-2			2	남동구 구월동 70-67번지 일원	798.2	종교집회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1-1	1	49,967.1	1	남동구 구월동 69-66번지 일원	42,756.8	공동주택
1-2			2	남동구 간석동 141-2번지 일원	6,046.6	소공원
1-3			3	남동구 구월동 70-32번지	612.3	종교집회장
1-4			4	남동구 구월동 70-75번지 일원	551.4	주차장
2-1	2	1,832.5	1	남동구 구월동 70-8번지 일원	1,030.6	공공청사
2-2			2	남동구 구월동 70-67번지 일원	801.9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차.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 없음)

카.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 기본 방향

○ 정비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청소년 탈선 등 범죄장소로 사용되거나 재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 단지설계 시 건축물 배치, 출입구 위치 등 물리적 환경 요소를 통해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범죄 등 최소화

2) 사업단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	계 획 내 용
이주철거 이전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자율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이주철거 이후	○ 구역 내 주요 지점에 경비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순찰 초소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예방 ○ 현장에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발생 여건 차단 ○ 이주 철거계획 수립 시 블록 단위의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이주 즉시 철거가 이루어져 공사기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가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함
공사착공 이후	○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파.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하.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해당 없음

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1-1	• 도로경계선	•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동주택용
		• 인접대지경계선	•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너.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74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선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주식회사 미추홀공간지적
2. 사 업 지 구 명 칭 : 수산1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73번지 일원(194필지/66,691㎡)
4. 대 행 업 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6154)로 문의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7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92-19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92-19 (도림동)	20090710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남하하여 세운 나라에서 이름에서 유래	2019061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비류대로 792-1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92-19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4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175-7 (장수동)	20091116	만의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9061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의골로 175-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75-7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102, 33-3, 33-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233 (논현동)	20090710	지역명칭 인용	2019061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로 23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33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10번길 5-8 (서창동)	20120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61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10번길 5-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8을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76호

개발제한구역 제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4호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지목별 평균치의 개요

가. 기 준 일 : 2019년 1월 1일

나. 단위면적 : ㎡

다. 지목현황 : 28개 지목

라. 고시내역 : “별첨”

2019. 6.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개발제한구역 제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단위 : 원/㎡)

구 분	평 균 치	비 고
전 체	1,078,901	
전	528,630	
답	509,074	
과수원	408,708	
목장용지	759,944	
임야	71,368	
광천지	-	
염전	-	
대	1,811,210	
공장용지	1,211,542	
학교용지	1,565,891	
주차장	1,342,620	
주유소용지	1,955,188	
창고용지	1,147,048	
도로	536,453	
철도용지	436,502	
제방	239,920	
하천	168,070	
구거	539,748	
유지	380,116	
양어장	-	
수도용지	201,377	
공원	329,514	
체육용지	355,131	
유원지	-	
종교용지	1,346,120	
사적지	-	
묘지	683,629	
잡종지	823,617	